

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3월 27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2월 19일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3월 2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. 3.26 제9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3월26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실장 권순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자동차세 관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로서 사실상의 소유 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순위개설(안 제36조제2항)
-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조정(안 제50조)
- 건축물의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(안 제9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평창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조례임
-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1월말에서

5월말로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임.

○ 법령의 형식·절차·자구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